

# 2019년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22.(월요일),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39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00건(안건번호 제2019-21035호~22907호)
  - 회의결과: 일본 애니메이션 11개 게시물 2개 안건(제2019-21035호, 21036호)은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게임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설정 게시물 1개 안건(제2019-21040호)은 링크된 해외사이트에 게시된 게임이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차기 제3분과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52건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2,83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4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회의록 4쪽의 저작권 침해 방법, 6쪽의 민원인의 정보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저작물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저작권 침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4쪽 전문위원 발언 부분은 회의공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민원인의 정보, 저작물명은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B 위원 : 이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특정 민원인의 정보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저작물명, 6쪽

전문위원 발언 중 일부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21035~2290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200건임

안전번호 제2019-21035~21037호는 일반인 신고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음

네이버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총 23개 게시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위 게시자는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19-21035호(1개 게시물), 21036호(10개 게시물)는 네이버 카페에서 '☆☆☆' 애니메이션을 1화부터 11화까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카페는 2019. 4. 16. 폐쇄 예정인 카페라고 공지한 바 있는데, (현재 카페 상태를 보여주면서)해당 카페는 현재 폐쇄되어 있어 접속이 되지 아니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21037호(12개 게시물)는 '☆☆☆' 애니메이션을 1화부터 12화까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한편 1화부터 10화까지의 각 게시물은 스트리밍과 함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보호원은 동일한 블로그에서 위 게시자가 복제·전송한 ‘☆☆☆’ 불법복제물(총 10개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이미 안내한 바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21035~21037호 일본 애니메이션 ‘☆☆☆’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를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좋겠음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제2019-21035호, 21036호는 심의위원회 심의시점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으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019-21037호는 가결하기로 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1039호는 일반인 신고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게시자가 국내에 정식 출간되지 않은 일본 만화 ‘★★★★★★★★’의 한글 번역본을 게시한 사안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21039호 일본 만화 무단 번역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만화의 분량을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자는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전체분량의 다수의 일본만화를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한글 번역본을 게시한 사안이지만 국내에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는 최신 만화가 제공되고 있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1039호는 만화 무단 번역 게시물로 한 화 전체 분량을 올린 점, 게시자가 유사한 형태로 만화 게시물을 여러 건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러한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1040호는 일반인 신고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티스토리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안드로이드 게임 ‘○○○○○○○○ ○○○○○○’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직접링크와 설치방법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아이피를 우회하

여 게임을 구매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실제로 구동이 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해당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사이트로 사이트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각종 게임의 크랙(Crack)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심의대상 저작물 ‘○○○○○○○○ ○○○○○○’ 게임의 합법시장 판매 여부와 무료 버전이 있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위 게임은 지역제한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접속 할 경우 서버에서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우회 접속을 하면 위 게임이 검색됨  
해당 게임은 Google Play에서 US\$ 7.99에 판매되고 있으며, 무료 버전은 배포되지 않음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에 기재 되어 있는 ‘MOD’의 의미를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사전적 의미는 개조나 변형을 의미하는 modification

의 줄임말로 쓰이며, 컴퓨터에서 모드(mod)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개조를 의미하고, 비디오 게임에서 모드(mod)는 이미 완성된 비디오 게임을 수정해 새로운 게임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함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게시물 제목들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게시물 제목에는 'MOD'라고 기재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설정된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해당 '○○○○○○○○ ○○○○○○'게임 설명과 함께 "NOTE:for MOD to work, please SAVE game progress and LOAD" 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게임 설정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대부분의 게임의 경우 합법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거나,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콘텐츠를 실행 할 경우 광고수익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음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제공되는 게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 메인페이지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DMCA Disclaimer"에 대하여 보여줄 것을 요청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요청한 페이지를 보여주면서)"DMCA" 면책조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페이지로 보임
- B 위원 : 해당 사이트에는 "DMCA Disclaimer" 안내가 되어있고, 게시물에서 제공되는 '○○○○○○○○ ○○○○○○' 게임의 APK파일,



OBB파일이 불법복제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21040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제공된 '○○○○○○○○○○○○○○○○○○○○' 게임이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1040호는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에 대하여 보완하여 차기 제3분과심의위원회 심의 시 재상정하도록 하겠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1040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게임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부결하기로 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21041호~22907호는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B 위원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시정조치 권고 가결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1041호~22907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352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1035호, 21036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21040호는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해서는 링크된 해외사이트에 게시된 게임이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차기 제3분과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21037호~21039호와 제2019-21041호~22907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352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 2,836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29.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